



#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 1. 개정이유

공통기준 및 규격 중 다양한 제품(칼면 등에 문구·도안 인쇄)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의 인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구 및 용기·포장 시험법 중 기 삭제된 금속제 총용출량 규격의 시험법을 삭제하고, 비소의 정확한 정량을 위한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강도시험법 및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시험 내용(검량선 설정 및 시험법 내용 추가)을 보완하고, 기준·규격 문구를 명확히 하여 일선에서 적용 시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기준·규격 문구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식품용 기구의 식품접촉면 인쇄기준 개선

1) 식품용 기구(칼 등)의 다양한 제품 개발·생산·지원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쇄방식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면에 대한 인쇄기준 합리적 개선

나. 검량선을 적용한 비소 정량분석법 개선

1) 금속제 재질별 규격에서 기 삭제한 총용출량 규격의 시험방법 삭제(Ⅳ.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 2. 항목별 시험법 2-8. 총용출량 시험법 나. 시험용액의 조제 4) 금속제)(Ⅳ. 2. 2-8)

2) 비소의 정확한 정량을 위해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강도시험법 및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에 검량선 작성 및 검량선을 이용한 시험법 내용 보완(Ⅳ. 2. 2-9)

다. 본체와 부속품의 재질·색상이 동일한 경우, 본체로 시험하고 기준규격 적용토록 기준 신설

1) 기준·규격 적용 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문구 및 근거 규정 명확화(Ⅱ. 1 가. 4), 6), 7), 9), 3. 바. 2) (5), 5. 나, 6. 다. 6), Ⅳ. 2. 2-6. 가. 1), 2), 라. 1), 2), 마. 1), 2), 바. 1), 2), 사. 1), 2), 가, 나), 아. 1), 2))

2) 동일 재질, 동일 색상의 본체와 부속품으로 구성된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본체에 대해서 시험하고 적부판정하도록 기준·규격 적용 문구 명확화(Ⅱ. 4. 바, 사)

3) 재생원료 기준 중 대상재질을 합성수지제로 범위 명확화 및 활성·지능 용기·포장 기준 중 최종제

품에 적용되는 규격 명확화, 폴리아릴설폰의 영문명 오류정정, 안티몬 시험법 중 염화안티몬(Ⅲ) 시약 영문명 통일 등 기준·규격 문구 정비(Ⅱ. 나. 2), 3) 가), Ⅲ. 1. 1-7. 가), Ⅳ. 2. 2-10. 나.)

###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4-97호, 2024.2.27.(24.2.27.~24.4.27.)
-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4.2.15.) : 비대상
-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4.5.20.~24.5.24.) : 원안의결

### 4.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1. 가. 4) 중 “정전기 방지, 유효성 부여 등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보조적으로 사용(정전기 방지, 유효성 부여 등)되는 원료성 물질은”로 한다.

Ⅱ. 1. 가. 6) 중 “식품”은 “식품 제조 시”로 한다.

Ⅱ. 1. 가. 7) “납은 0.10% 이하”를 “납(땀납 포함)은 0.10% 이하”로 한다.

Ⅱ. 1. 가. 9)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는 땀납 중 납은 0.10%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Ⅳ. 2.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에 따른다.”를 삭제한다.

Ⅱ. 1. 가. 10)을 9)로 하고, 11)을 10)으로 하고, 12)를 11)로 한다.

Ⅱ. 1. 나. 1) 마)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식품용 기구 중 식품과 일부 접촉하는 면에 인쇄하는 경우, 잉크 성분이 용출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신설한다.

Ⅱ. 1. 나. 2) 중 “재생원료”를 “합성수지 재생원료”로 한다.

Ⅱ. 1. 나. 3) 가) 중 “기준 및 규격”을 “공통 기준·규격 및 재질별 규격”으로 한다.

Ⅱ. 3. 바. 2) (5) 중 “낙하시험법에 따를 때”를 “낙하시험 결과”로 “누수시험법에 따를 때”를 “누수시험 결과”로 한다.

Ⅱ. 4. 바.를 사.로 하고,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냄비와 같이 본체와 본체에 부속되어 있는 뚜껑 등으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본체와 뚜껑 등의 재질 및 색상이 동일하다면 본체에 대해서만 시험하고 적부를 판정할 수 있다.

Ⅱ. 5. 나. 중 “이 기준 및 규격에 정하여진” 및 “또한, 중금속 등 시험에는 상품화된 kit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고 판정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II. 6. 다. 6) 중 “세트의 경우”를 “제품이 섞여 있는 경우”로 한다.

III. 1. 1-7. 가. 중 “polyacrylsulfone”을 “polyarylsulfone”으로 한다.

IV. 2. 2-6. 가. 1), 2), 라. 1), 2), 마. 1), 2), 바. 1), 2), 사. 2), 나, 아. 1), 2) 중 “넣을”을 “채울”로 한다.

IV. 2. 2-6. 사. 1), 2) 와 가) 중 “넣었”을 “채웠”으로 한다.

IV. 2. 2-8. 나. 4)를 삭제한다.

IV. 2. 2-9. 라. 4) 중 “시험할 때 시험용액에 대하여 얻어진 발광강도는 표준용액에 대하여 얻어진 발광강도 보다 커서는 아니된다”를 “시험한다”로 하고, 4) 다음에 가)와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검량선의 작성

표준용액에 대해 2-12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강도측정법(파장 193.7 nm)에 따라 시험하여 얻어진 발광강도에 대한 피크면적을 각각의 농도에 대하여 플롯(plot)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나) 시험

시험용액을 가) 검량선의 작성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얻어진 발광강도에 대한 피크면적을 이용하여 미리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시험용액 중 비소의 양을 구한다. 단, 농축배수를 보정해준다.

IV. 2. 2-9. 마. 4) 중 “감응세기 보다 커서는 아니된다”를 “감응세기를 비교하여 시험용액 중 비소의 농도를 구한다”로 하고, 4) 다음에 가)와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검량선의 작성

표준용액에 대해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m/z 74.9)에 따라 시험하여 얻어진 질량수에 대한 피크면적을 각각의 농도에 대하여 플롯(plot)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나) 시험

시험용액을 가) 검량선의 작성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얻어진 질량수에 대한 피크면적을 이용하여 미리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시험용액 중 비소의 양을 구한다.

IV. 2. 2-10. 나. 1) 다) 와 2) 다) 중 “(antimony(III) chloride)”를 “(antimony trichloride)”으로 한다.

#### 부 칙<제2024-29호,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